

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5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4. 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4. 9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4. 15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-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·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으나 운영중에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유사 시설기관과의 혼돈 방지(안 제4조제2항)
- 자치센터기능의 우선 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(안 제5조제1항)
- 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선정시 읍면사무소의 자율성 확대(안 제6조제2항)
- 주민자치센터운영을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조성(안 제7조제2항)
-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비등 재정적지원 원칙(안 제7조제5항)
-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단 설치운영 근거마련(안 제7조제6항)
-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주체의 명확화(안 제10조제2항)
- 사용료 등을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자율성(안 제10조제3항)
-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여범위를 자치센터 운영에 한정함(안 제15조)

-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 신설(안 제17조제1항)
- 위원 자격 요건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전문지식(안 제17조제2항)
- 당연직 위원의 해촉시 위원회 심의로 결정(안 제20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안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 하였으나, 운영중에 발생한 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선정시 읍면사무소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센터 운영비 등 재정적 지원의 원칙 근거의 마련,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주체의 명확화,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의 신설, 당연직 위원의 해촉시 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행정자치부 개정 준칙에 의거 개정·보완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2. 4. 1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